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7,246,849	18,517,405
일반회계	544,732,449	16,341,973
특별회계	72,514,400	2,175,432
공기업특별회계	55,030,219	1,650,907
공영개발특별회계	4,223,807	126,7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065,105	661,95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741,307	862,239
기타특별회계	17,484,181	524,525
의료급여특별회계	326,406	9,79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5,350	461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8,087	4,443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5,024,605	150,738
균형발전특별회계	1,000,000	30,000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2,401,271	72,038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443,825	73,31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01,000	18,030
수질개선특별회계	4,723,007	141,69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00,630	24,0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이월사업비는 별첨과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76,11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7,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사업(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